

『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』 운영기업 추가 모집공고

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, 『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』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·중견·중소기업 및 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19년 9월 4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,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,
- 민간기업에서 발굴·육성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에서 사업화·R&D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

□ 사업내용

- 운영기업에서 발굴·육성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사업화 자금, R&D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

운영기업이란?

사내벤처 지원제도 및 인력, 자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 창업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대·중견·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

2. 운영기업 지원 개요

□ 선정 규모 : 15개사 내외

□ 운영기업 지원내용

①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

-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전담기관의 평가에 최종 선정된 팀에 한함
- * 단,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(현물포함) 매칭 의무

② 분사창업기업 사업화, R&D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

- 운영기업이 추천한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, R&D자금 4억원(4IR분야, 최대 2년간) 지원
- * 지원자금은 전담기관 등의 평가·선정기업에 한하며,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%이내(현물포함) 매칭 의무
-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(융자, 보증) 연계

③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

- 운영기업 우수 유공자 정부포상(장관표창) 및 사내벤처 육성 관련 전문가 교육 실시
- 대기업 및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각종 네트워킹 행사 등 운영지원
- 분사창업기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부여(최대2점) 등

3. 운영기업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(신청자격) 분사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 창업기업을 발굴·육성하고자 하는 **대*·중견·중소기업, 공기업****

* 대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따른 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
** 공기업 : 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'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'

□ (신청요건) 아래 ①~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선정 후라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나, 허위기재,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① 운영기업 내부 '사내벤처 운영규정' 마련 및 운영

-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·급여·복무·보상 등을 규정하는 회사 내규* 마련 및 시행

* 분사창업 후 실패 시 재입사 보장, 자금·인력·사무공간 등 지원내용은 반드시 포함

< 신청시 서류제출 기준 >

- ◆ 신청접수일 기준 관련 규정이 갖춰진 경우 : 증빙자료 제출(관련문서 및 규정)
- ◆ 관련 기준 준비 중일 경우, 신청 시 추진계획 제출 후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과 협약체결 전까지 요건 완료해야 함

② 사내벤처 운영팀 운영

- 사내벤처팀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또는 팀 운영

* 운영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존 부서를 운영팀으로도 지정 가능

** 전담조직(부서)는 사내벤처팀 운영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(창업·벤처 지원 경력의 전담인력 보유 시 운영기업 선정 우대)

- 운영팀은 동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, 사내벤처팀 발굴 → 육성 → 분사 등 전 과정 총괄 기획·지원

< 신청시 서류제출 기준 >

- ◆ 신청접수일 기준 조직(인력)이 갖춰진 경우 : 증빙자료 제출(관련문서)
- ◆ 관련 조직 준비 중일 경우, 신청 시 추진계획 제출 후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과 협약 체결 전까지 요건 완료해야 함

③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*, 운영기업과 분사창업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계획** 마련 및 운영

*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(예시) : 제품개발, 멘토링, R&D, 교육 등

후속 상생협력 형태 (예시)	
구 분	주 요 내 용
인력 개발	운영기업 요구수준의 제품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들에 대한 기술지도, 훈련 및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 제공 등
생산성 향상	공정혁신, 불량률 감소, 새로운 공정혁신 기술 개발에 따른 테스트 기회 부여 등 경영혁신, 품질·신뢰성 향상 지원활동 등
제품혁신 촉진	제품혁신과 신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
표준·특허강화	표준 선점에 의한 시장 주도권 확보,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공세 대비 등을 위한 특허 공유, 휴먼특허 이전 지원 등

④ 사내벤처팀 지원 대응자금(사업화 자금) 확보

- 사내벤처팀별 지원받는 정부지원금(최대 1억원) 대비 동 금액 이상의 매칭자금을 사내벤처팀에게 지원하여야 함(협약 기간 중)

- 단,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대비 대응자금을 차등 적용 (50%)

* (예시) 1개 사내벤처팀 운영을 위해 총 1억원의 정부지원금 지급이 확정(선정)된 경우

→ 대·중견기업·공기업 : 자체 대응자금 1억원 이상 마련(현물 포함)

→ 중소기업 : 자체 대응자금 5천만원 이상 마련(현물 포함)

** 대응자금 납부 : 운영기업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로 대체하고, 향후 운영기업 선정 후 추천한 사내벤처팀이 정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매칭 실행

< 운영기업 대응자금 매칭 비율(안) >

항 목	구 분	
	현 금	현 물
운영기업 대응자금	정부지원금의 70% 이상	30% 이하

* (현물) 운영팀의 인건비, 연구·실험장비 및 기자재 제공, 기술 이전 비용 등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'19. 9. 4(수) ~ '19. 9. 27(금)

□ 신청방법

- K-startup (www.k-startup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
- 제출서류 : 참여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① K-startup 접속 → ② 회원가입(대표자 또는 위임자) 및 로그인 →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 시스템 클릭 → ④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클릭, 사업신청 → ⑤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 체크 → ⑥ 기본정보 입력 → ⑦ 운영팀* 정보 입력 → ⑧ 참여신청서·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(용량제한 20MB 유의) → ⑨ 제출 ('마이페이지'에서 신청 확인)

* 운영팀은 3. 신청요건 ②번 항목 해당되는 인원 입력
 **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내용은 (별첨)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

5.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

□ 선정방법

- 전담기관이 2단계 평가절차 (① 서면평가 + ② 현장확인 및 인터뷰)를 거쳐 최종 선정

* 단, 신청기업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에서 ②단계 현장 확인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음

① (서면평가) 사내벤처팀(분사창업기업) 발굴 및 지원계획의 타당성 (50%), 구체성(50%)을 확인

② (현장확인 및 인터뷰) 신청기업(운영팀장 등)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, 사업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

* 평가항목 :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(50%), 사내벤처팀(분사창업기업) 육성방안 (5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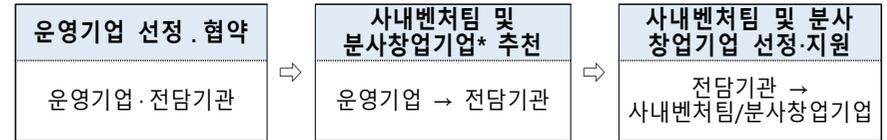
◆ 서면평가 (50%), 현장인터뷰 (50%) 점수를 합산하여 운영기업 규모별 수요, 사업목적,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

< 운영기업 선정절차 >

서면평가 (50%)	■ 요건검토,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	'19. 10월 초
↓		
현장확인 및 인터뷰 (50%)	■ 서류상의 인프라 등 사실여부 확인 ■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과제 책임자, 임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참여의지 확인	'19. 10월 초
↓		
평가위원회	■ 운영기업 최종 확정	'19.10월 중
↓		
협약	■ 운영기업-전담기관 협약체결	'19.10월 말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현장방문 일정은 기업별로 조정 및 진행

□ 향후 추진절차(안)



* 분사창업기업은 운영기업의 추천서(MOU 등)를 받아 분사창업기업이 직접 신청

- 최종 선정된 운영기업은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내용을 이행

□ 운영기업 신청·지원 제외대상

- 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
- 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
- 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☞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6. 유의 사항

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사내벤처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□ 사업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표의 위임을 받은 사내벤처 운영팀장 등이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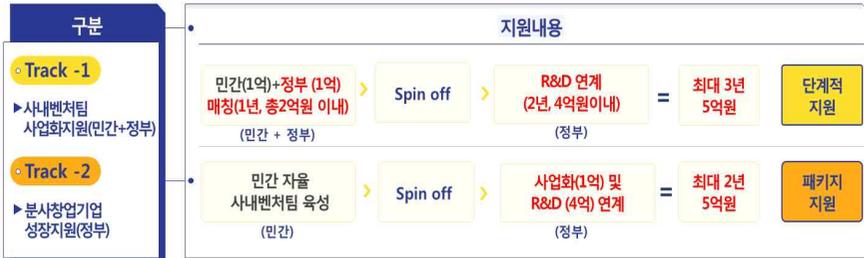
□ 신청·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고, 전담 기관과 협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음

□ 동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업이 법규 또는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, 신청자격 및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기업 선정(협약)취소,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7.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지원개요

- (지원대상) 사내벤처팀 및 사내벤처팀 구성 후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
- (지원규모) 100억원, 100개팀 이내
- (주요내용)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'사업화+R&D' 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(2년, 최대 5억원)

< 분사 전·후 단계별 지원내용 >



구분	분사 前 (TRACK 1)		분사 後 (TRACK 2)	
대상	사내벤처팀(협약 후 1년 이내 분사 조건)		분사 후 3년 이내 창업기업	
지원 내용	사업화 지원		사업화 및 R&D 패키지 지원	
	직접	아이디어 발굴, 팀 구성 및 활동 지원	직접	양산 (시생산), 판로개척 (해외마케팅) 등 사업화 및 R&D 지원
	간접	사례 전파, 창업교육, 네트워킹 등 지원	간접	모기업의 기술사용, 생산시설 및 유통망 활용 등 지원
	후속	분사 後 후속지원 연계	후속	세제혜택, 정책자금, 후속투자 등

- (모집·선정)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추천은 운영기업의 추천을 통해 모집,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확정

8. 문의처

- (정책관련)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: 042-481-4414, 4535
- (사업내용 및 신청관련)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: 02-3440-7305, 7303, 7330, 7307